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선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12.

발의자 : 박선숙 · 장정숙 · 이찬열
이동섭 · 김광수 · 최도자
정성호 · 박지원 · 김관영
윤영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·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.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(안 제4조의3).

한편,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·제공 등 현황에 관한 ‘통계자료’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.

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·견제

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4).

법률 제 호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사용 목적(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)

제4조의4 중 “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,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”를 “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4조의4(금융위원회의 업무)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, 제공, 통보 및 통보유예 <u>현황</u>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,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4(금융위원회의 업무) --- ----- ----- -----<u>현</u> <u>황을</u> <u>파악하여</u> <u>분석하고</u> <u>그</u> <u>결</u> <u>과를</u> <u>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</u> <u>바에</u> <u>따라</u> <u>매년</u> <u>정기국회에</u> <u>보고하여</u> <u>약</u>-----.</p>
--	--